

제347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10. 18 ~ 10. 30)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47회 임시회
(2017. 10. 18 ~ 10. 30)

제347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의 문턱에서 제347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애환을 나누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전라북도 위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도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차별 받아온 정부인사와 조직, 사업 등에서도 일정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에 향토적 성격이 강한 도내 대표기업 4개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단독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힘든 일인 줄 압니다만 해당업체 및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이 어려움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학업경쟁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스템도 꼼꼼히 챙겨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이틀간의 도정질문과 유관·출연기관 내년도 재정지원을 위한 출

연동의안 등 많은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않은지 꼼꼼히 챙기시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문제해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이 대한민국 최고수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직장일수록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다양한 정책을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347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10. 11(수)
- 집회 일자 : 2017. 10. 18(수)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행정사무감사계 승인의 건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10. 18 ~ 10. 30(13일간, 2017년 : 89일, 총누계 505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연누계 : 24, 총 누계 100)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47회 임사회	14	1	3	2	2	5	1	
2017 년도	132	11	24	21	19	25	19	13
총 누 계	827	58	170	118	129	143	150	59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10.18(수)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신상발언 1.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지방비 분담 요구방침 철회 및 전액 국비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4.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건의안 5. 서남대 학교폐쇄 개고 철회 결의안 6.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 7.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8.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26(목) 10: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괄질문·일괄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 -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 - 농산업경제위원회 백경태 의원 - 교육위원회 조병서 의원 	
10.27(금) 10: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3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괄질문·일괄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 -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 -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 	
10.30(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4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만 의원, 양성빈 의원, 이해숙 의원, 김대중 의원, 이성일 의원 양용호 의원, 최인정 의원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4.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6.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9. 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11.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12.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1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1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19.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20.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전북테크노파크(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26.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2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2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29.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3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3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32.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33.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3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35. 전자부품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3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37.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영사(미래산업과) 출자 동의안 38.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39.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40.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41.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42.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43.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4.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7.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 출자 동의안 4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만성 A-2BL 공공임대주택 건립) 49.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50.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51.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2.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3.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5.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6.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57.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8.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 59.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0. 전북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1.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2.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63. 전북 클럽 트레인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64.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5.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67.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8.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71.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72.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 73.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결의안 74.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10.1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의 건 -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2차)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10.20(금)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 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10.23(월)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소방안전타운 조성 예정부지(장수군) 현장 확인 	
	10.24(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 의안심사 -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환경복지위원회	10.19(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장수 생태관광지(금강발원 뚝봉샘) - 임실 생태관광지(왕의 숲) 	
	10.20(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숲해설 운영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농산업경제	10.19(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위 원 회	10:00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20(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출연 동의안 -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출연 동의안 -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출연 동의안 -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 전자부품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출연 동의안 -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용사(미래산업과)출자 동의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산업과)출연 동의안 -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10.18(수) 15: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전라북도 순환관광 버스 운영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시·군 대표축제 전문 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 -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전북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 전북 클럽 트레인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출자 동의안 -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 사업동의안(만성 A-2BL) -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도로 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 19(목) 10:3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벤치마킹(20일까지) 	
	10.19(금) 18: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10.21(토)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2017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막식 	
	10.30(월) 13:2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 및 의견청취 	
교 육 위 원 회	10.18(수) 15: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독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 효천초등학교)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 학생자살사건, 도 교육청 총력대응 촉구 결의안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47회 (2017. 10. 3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81	15	7	8	0	0	56	0	0	9	1	
	누 계	1218	647	295	347	11	13	315	0	40	153	47	
의 회	소계	금회	24	13	7	6			1			9	1
		누계	628	405	252	153	0	13	1	9	0	0	153
	의원	금회	22	13	7	6						8	1
		누계	578	405	252	153	0	12	0	3	0	0	138
	위원 회	금회	2	0					1			1	
		누계	50	0	0	0	0	1	1	6	0	0	15
	도지사	금 회	55	1		1			54				
		누 계	449	187	131	149	7	0	0	240	0	21	0
교육감	금 회	2	1		1			1					
	누 계	141	55	6	45	4	0	0	66	0	19	0	1

2. 처리현황

○ 총 관

제347회 (2017. 10. 3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81	83	79	2	0	2	0	0	2	
	누계	1218	1191	1014	145	0	18	0	14	28	
조 례 안	소계	금회	15	16	14	2	0	0	0	0	2
		누계	647	630	498	114	0	3	0	6	26
	의회	금회	13	14	12	2					1
		누계	405	382	309	68	0	0	0	5	23
	도지사	금회	1	1	1						0
		누계	187	185	142	40	0	2	0	1	2
	교육감	금회	1	1	1						0
		누계	54	53	46	6	0	1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13	12	11					1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56	56	55			1			0	
	누계	315	314	289	9	0	11	0	5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1	1		1					0	
	누계	40	40	18	20	0	2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9	10	9			1			0	
	누계	153	153	149	1	0	2	0	1	0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0	
	누계	49	49	49	0	0	0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73	12	0	4	56	0	1	0	0	74	69	3	2	0	2	
	누 계	1030	641	13	5	306	0	40	17	3	1002	837	131	18	13	28	
운 영 위 원 회	금 회																
	누 계	56	36	13	1	0	0	0	6	0	50	46	1	1	2	6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11	1			10					11	10		1		0	
	누 계	197	135	0	0	50	0	0	2	1	194	168	23	3	0	3	
환 경 지 위 원 회	금 회	9	5		4						9	8		1		1	
	누 계	147	122	0	4	18	0	0	3	0	141	117	20	2	2	6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23	1			22					24	22	2			1	
	누 계	185	87	0	0	95	0	0	3	0	179	153	19	7	2	6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22	4			18					22	22				0	
	누 계	188	110	0	0	74	0	0	4	0	186	150	26	0	3	2	
교 육 위 원 회	금 회	6	1			5					6	6				0	
	누 계	209	137	0	0	69	0	1	0	1	202	173	22	3	4	7	
특 별 위 원 회	금 회	2				1		1			2	1	1			0	
	누 계	42	0	0	0	1	0	39	1	1	4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1			1			9	1	11	11					
	누계	191	1			8		139	43	191	188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81	15			56			9	1	83	79	2		2	
	누계	1218	647	13	1	315		40	153	49	1218	1191	145		14	18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47회 (2017. 10. 31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1218	647	295	347	11	13	1	315	0	40	153	49
의 회	소 계	628	405	252	153	0	13	1	9	0	153	47
	의 원	578	405	252	153	0	12	0	3	0	138	20
	위 원 회	50	0	0	0	0	1	1	6	0	15	27
전라북도지사	449	187	131	149	7	0	0	240	0	21	0	1
전라북도교육감	141	55	6	45	4	0	0	66	0	19	0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47회 (2017. 10. 31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1218	1191	1014	145	0	18	0	14	28	
조 례 안	소 계	647	630	498	114	0	3	0	6	26
	의 회	405	382	309	68	0	0	0	5	23
	도 지 사	187	185	142	40	0	2	0	1	2
	교 육 감	54	53	46	6	0	1	0	0	1
규 칙 안	13	12	11					1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315	314	289	9	0	11	0	5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40	40	18	20	0	2	0	0	0	
건 의 결 의 안	153	153	149	1	0	2	0	1	0	
기 타 의 안	49	49	49							

의안번호 79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장학수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6. 8. 25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6. 8. 3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의 결 일 자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월남전 기간 중 연인원 32만명에 달하는 파월장병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했으나
- 이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지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 보훈의 가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파월장병 및 유가족들이 통탄의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임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윤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7.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7. 5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라북도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전라북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안 제4조 ~ 제5조)
- 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라. 감정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범지침 배포(안 제7조 ~ 제8조)
- 마.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등(안 제9조 ~ 제12조)
- 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13조 ~ 제14조)
- 사.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아. 민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안 제16조)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훈열·정호윤·최명철·국주영은 김영배·송성환·이성일·이호근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범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흉악해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여성·아동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과 여성·아동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와 제7조)
- 마.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 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을 규정함(안 제11조에 제19조)
- 사.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 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을 규정함(안 제24조~제25조)
- 자. 행정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
- 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공정무역”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계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원조프로그램만으로는 세계의 가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통해 생산자의 자립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형태로 인식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가 공정거래와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정무역”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및 지원 범위, 구매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라.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 54백만원

기능경기대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는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업무를 전문기술과 능력 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근 거 :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제5조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3조
- 나. 위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 다. 위탁금액 : ‘18년도 사업비 620백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각종 교육 및 전문 경영 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 경영능력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근 거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나. 대 상 : 도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부처형사회적기업
-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기관 선정·위탁
- 라. 예산지원 : 총 270백만원(국가직접 190, 도비 80)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각종 교육 및 전문 경영컨설팅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마을기업의 자립 경영 능력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근 거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나. 대 상 : 도내 지정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 설립 예정 공동체 등
-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기관 선정·위탁
- 라. 예산지원 : 총 342백만원(국비 171, 도비 171)
- 마. 위탁절차 : 모집 공고 및 선정 심사('17.12~' 18.1월) → 계약 체결(' 18.1월)

전북테크노파크(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 2개 사업 1,030백만원(도비)
 -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사업비 출연 : 980백만원(도비)
 - 창업 리턴패키지 지원 사업비 출연 : 50백만원(도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7년도<2차추경> 및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 1개 사업 210백만원(국비2,100, 도비210, 기타280)
 - 세대융합창업캠퍼스운영(국가직접) : 210백만원(국비 2,100, 도비 210, 기타 280)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 4개 사업 3,280백만원(도비)
 - ①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출연 : 260백만원(도비)
 - 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출연 : 20백만원(도비)
 - ③ 경영안정화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사업비 출연 : 500백만원(도비)
 - ④ 자영업자 금융비용부담 경감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신규): 2,500백만원(도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 2개 사업 3,440백만원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국가직접) / 2,440백만원
(국가직접 <2,460> 도비 2,440)
 -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 조성 사업비 출연(국가직접) / 1,000백만원
(국가직접 <2,000> 도비 1,000)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전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 5개 사업 12,290백만원(국비5,850, 도비6,440)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390백만원(국비<1,200>, 도비390)
 -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 5,200백만원(국비2,600, 도비2,600)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 3,400백만원(국비2,000, 도비1,400)
 -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 : 500백만원(국비250, 도비250)
 -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설립 : 800백만원(국비<1,200>, 도비800)
 - 전라북도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역량강화 지원(국비1,000, 도비 1,00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 1개 사업 2,500백만원(도비)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 2,500백만원(도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업비 출연 : 1개 사업 100백만원(도비)
 - 특성화고 졸업·취업자 야간대학 장학금 지원 : 100백만원(도비)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 12개 사업 10,265백만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 3개 사업 585백만원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지원 : 500백만원(도비)
 - 친환경섬유 마케팅 지원 : 40백만원(도비)
 -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 45백만원(도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출연 : 1개 사업 2,400백만원
 -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사업 : 2,400백만원(국비1,200, 도비1,200)

전자부품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 1개 사업 1,800백만원
 -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 : 1,800백만원(국비<2,000>, 도비1,8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 1개 사업 500백만원
 -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500백만원(국비<10,000>, 도비500)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영사(미래산업과) 출자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기술기반펀드 위탁운영사 출자 : 1개 사업 375백만원
 - 공공기술사업화펀드 조성 참여 : 375백만원(국비<8,750>, 도비375)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금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전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 7개 사업 2,950백만원
- 탄소산업활성화 T2B지원사업 : 600백만원(지특300, 도비300)
 -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국가직접지원) : 1,400백만원(국<2,600>, 도 1,400)
 - 탄소복합재 적용 주얼리 개발·생산기업 지원 : 400백만원(지특200, 도비200)
 - 3D프린팅산업 보급 확산 및 교육 : 200백만원(도비)
 -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 200백만원(국<880>, 도200)
 - 3D 휴대용 스캐너 연구개발장비 구축(국가직접지원) : 50백만원(국<630>, 도50)
 -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 : 100백만원 (도비)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산업과) 출연금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연 : 1개 사업 200백만원
 - 탄소기업 R&D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출연 : 200백만원 (지특100, 도비100)

의안번호 1157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 1개 사업 / 150백만원(국비<100>, 도비 50)
 - 로봇융합 비즈니스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150백만원(국비<100>, 도비 50)

자동차융합기술원(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동차융합기술원 사업비 출연: 10개 사업 / 9,800백만원(지특 4,575, 도비 5,225)
-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비 지원 : 300백만원(도비)
 -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1,000백만원(도비)
 -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 1,000백만원(지특 500, 도비 500)
 - 글로벌 빅바이어 연계 수출기업화 촉진사업 : 1,000백만원(지특 500, 도비 500)
 -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 1,000백만원(지특 500, 도비 500)
 - 전북 자동차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 50백만원(도비)
 -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 2,000백만원(지특 1,000, 도비 1,000)
 -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 지원센터 구축 : 3,000백만원(지특 2,000, 도비 1,000)
 - 뿌리·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 페어 : 150백만원(지특 75, 도비 75)
 -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사업 : 300백만원(도비)

전북개발공사(주택건축과) 출자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개발공사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투자되는 전북개발공사 출자금을 2018년도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출자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유가증권) 취득 계획을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현금 출자 : 9,000백만원
- 나. 공유재산(유가증권) 취득 : 9,000백만원

의안번호 1160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도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기간('15. 8 ~' 17. 12. 30.) 만료 도래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 나. 위탁업무
 - 취학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 다. 소요예산 : 1,124백만원(3년)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및 타 국가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 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성명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이주영 (51.09.30)	국회의원	경남 (마산)	○ 前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찬 (54.05.07)	국회의원	경남 (창원)	○ 前 해군참모총장	
김성태 (54.07.24)	국회의원	경남 (창원)	○ 前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박경미 (65.10.15)	국회의원	서울	○ 現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함중환 (44.01.08)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강원 (원주)	○ 前 강원도지사	

성명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서은배 (53.06.16)	한국스카우트연 맹 중앙치프 커미셔너	부산	○ 前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총재	
이항복 (54.10.28)	한국스카우트연 맹 국제커미셔너	부산	○ 前 세계스카우트이사회 의장	
Carlos Raúl (76.07.28)	한국스카우트연 맹 국제PM	멕시코	○ 前 스웨덴 월드스카우트 잼버리 멕 시코 단장	
Mazhar Ali Khan Mecci (64.01.25)	한국스카우트연 맹 국제PM	인도	○ 現 아시아-태평양 지역 SGF 위원회 사무총장	
AbdAlla AbdElhamid (85.11.06)	한국스카우트연 맹 국제PM	이집트	○ 前 아랍에미리트연맹 액티비티 슈퍼바이저	
Assoti Essosolim (89.07.29)	한국스카우트연 맹 국제PM	토 고	○ 前 “TOGO 2000” 박람회 Communication Assistant	

행정사 실무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행정사법」 제25조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의 자질 및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대상 :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 나. 교육내용 : 행정사업 신고*를 위한 실무교육
 - * 행정사업 신고 :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신고 가능
- 다. 교육실시 : 도지사 (행정사협회에 위탁시행)
- 라. 교육장소 : 행정사협회
- 마. 교육시기 : 2018년(연중)
- 바. 교육종류 및 기간 : 기본소양교육(20시간), 실무수습교육(40시간)
- 사. 예산지원 : 비예산사업 (교육대상자 자부담)

의안번호 116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 : 4,157백만원(도비 2,307백만원)

의안번호 1164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16백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지방비 분담 요구방침 철회 및 전액 국비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1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10.19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4개년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음
- 그러나 정부는 기재부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당초와 달리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오고 있고, 새정부 들어서도 지방비 분담요구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이에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지방비 분담 요구방침 즉각 철회와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 건의함

의안번호 1167

전북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출연금액 : 3,985백만원(국비 300, 도비 3,685)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비 출연 : 1,605백만원

의안번호 116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출연 : 421백만원

의안번호 117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출연 : 255백만원

전북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북연구원 운영비 출연 : 4,000백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획관실)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0백만원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전주 만성 A-2BL 공공임대주택 건립)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전주 만성 A-2BL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나. 위 치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 다. 부지면적 : 42,877㎡
- 라. 건축계획 : 830세대(59㎡형)
- 마. 추정사업비 : 1,429억원(용지비 166, 건축비 1,083, 기타 180)
- 바.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17. 2. 4.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용어변경 및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호바목(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세부내용 변경]
- 나. 제9조제6호(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용어변경]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 등에 따른 유입학생을 배치하고,
- 개발지구 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 효자동에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 : 학급, 명, 천원)

지역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 예정일	소요 예산액	비고
		일반	유치원					
전주	전주 효천초	36(1)	3(1)	1,044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301일원	2020.3.1	29,212,832	

※ ()는 특수학급으로 본 수에 미포함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재)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출연 : 1,347백만원

전라북도 삼락농정포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 농업·농촌의 민간 전문기관·단체와 정보 공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농정 현안 및 중장기 정책 아젠다 중심의 연간 포럼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단계별 토론을 통해 농정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업무 특성상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 전문기관·단체에서 수행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삼락농정포럼”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삼락농정포럼 운영
- 나. 위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간)
- 다. 위탁사무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라. 위탁금액 : 100백만원(도비 100)

의안번호 1178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3,191백만원

의안번호 1179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1,669백만원

(재)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가.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1,400여개의 가맹점 관리, 전북투어패스 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 다채널 판매채널 가동, 각종 이벤트 및 홍보 마케팅, 콘텐츠 및 연계상품 개발 등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 민간위탁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1 ~ 2019. 12월(2년)
- 나. 위탁업무
 - 전북투어패스 가입 가맹점 관리, 정산 및 통합시스템 운영
 - 전북투어패스 온-오프라인 홍보, 연관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 다. 소요예산 : 1,292백만원(2018년, 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의안번호 1182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 순환관광버스 확대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전북 관광 만족도를 제고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2018. 3 ~ 12월
- 나. 위탁업무: 버스 및 기차(ktx)를 연계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관광 상품 운영
- 다.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도내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 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 양성을 통해 전북 관광의 올바른 문화조성 및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 이미지 제고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2 ~ 12월
- 나. 위탁업무
 - 문화관광해설사 이론 및 현장교육
- 다. 소요예산 : 100백만원(기금 5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8년도 시·군 대표축제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축제의 문제점 도출 및 축제의 국제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추천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2 ~ 12월
- 나. 위탁업무 : 14개 시·군 대표축제 사전 컨설팅
- 다.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의안번호 1185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콜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관광박람회 및 관광설명회, 세일즈콜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추진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8. 1 ~ 12월

나. 위탁업무

- 관광홍보관 운영(부스설치, 콘텐츠 구성, 관람객 홍보, 사후관리 등)
- 세일즈콜 및 관광설명회 : 연중계획 수립, 국내외 여행사 대상, 세일즈콜 및 관광설명회 실시 등
- 호남권 공동 홍보 마케팅 박람회 및 관광설명회, 세일즈 콜 추진

다.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북의 주요 관광자원을 개발·홍보하고 최근의 소규모·개별관광객 여행 추세에 맞춰 도내 관광지를 적극적·선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1 ~ 12월
- 나. 소요예산 : 250백만원(도비)
 - 마케팅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비 : 120백만원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 130백만원
-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맞춤형 수학여행 유치 고도화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미래잠재고객인 전국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여행단 유치로 전라북도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육성, 전담 콜센터 운영, 세일즈콜 등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1 ~ 12월
- 나. 위탁업무
 - 수학여행 콜센터 운영(안내시스템 구축)
- 다. 소요예산 : 650백만원(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및 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최근 늘고 있는 자유여행객(FIT) 대상으로 서울·부산·제주 등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의 생활 및 관광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1 ~ 12월
- 나. 위탁업무
 -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분야 : 200백만원
 -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분야 : 150백만원
- 다. 소요예산 : 350백만원(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의안번호 1189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자원이자 특화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타 지자체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수도권이나 제주도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외래관광객 유치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8. 1 ~ 12월

나. 위탁업무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
- 태권도 연계 관광홍보 마케팅
- 전북SIT 특수목적관광단 연계 교류행사 개최
- 특수목적관광(SIT)상품 개발 및 홍보

다. 소요예산 : 300백만원(도비)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태권도를 연계한 전라북도 대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태권도성지 전라북도를 알리며 태권도원 연계 14개 시군으로 관광객 유치 확산을 도모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1 ~ 12월
- 나. 위탁업무
 - 글로벌무술·문화교류행사
 - 태권도 연계 관광포럼 또는 컨퍼런스 개최
 - 14개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행사
- 다.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의안번호 1191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는 공항부재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낮아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전북 관광지 접근성을 높여 전북 관광 만족도를 제고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2 ~ 12월
- 나. 위탁업무
 -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행
- 다. 소요예산 : 200백만원(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전북 클럽 트레인 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기업·단체·기관 등의 주요행사(회의·워크숍, 포상관광단 등)를 열차 내에서 실시하고 도내 잭버리 개최예정지와 주요관광지에서 체험활동 후 농촌지역에서 숙박과 지역특산품을 연계한 6차 산업 관광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18. 1 ~ 12월
- 나. 위탁업무
 - 국내외 단체 및 기관 등 관광상품 홍보
 - 관광상품 운영 및 모객 등
 - 6차 산업 연계 관광객 유치 행사
- 다.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기존 캠페인식 현장 홍보에서 벗어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IT 기술을 접목하여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및 전북관광 홍보를 차별화

□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2018. 1 ~ 12월

나. 위탁업무

- 관광서비스 차량 운전원(안내도우미 및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 차량유류비, 보험
- 차량 운행 및 관리
- 홍보물 제작, 이벤트, 행사물품 구입
- 기타운영비 등

다. 소요예산 : 120백만원(도비)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 나.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3조)
- 다. 센터의 업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 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마. ‘자문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안 제9조)
- 바.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7.5.30.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반영
- 일부개정 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반영하여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강화

□ 주요내용

- 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전라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정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개정(안 제5조제3항)
- 나.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민간단체’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로 개정(안 제7조제2항)
- 다. 「정신보건법」 제13조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개정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안 제7조제3항)
- 라. ‘도지사의 책무’ 정비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3조제2항)
- 마.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내용 정비(안 제9조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이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마이스(MICE)산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에도 도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임
- 전라북도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북도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및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마이스 행사의 유치·개최지원, 국내외 홍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사업 추진토록 하고, 전문기관·단체 등과 공동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효율적인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및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 및 교육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라.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및 실비의 제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경보제 오존 포함) 미세먼지 예·경보에 오존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
- (발령권역 확대)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권역을 전라북도 단일권역에서 시·군별로 구분하여 발령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
- 나. 오존 예·경보 추가
- 다. 경보제 발령권역을 전라북도 단일권역에서 시·군별 권역으로 변경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완수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최근 국토개발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의 사업내용에 도시재생사업 전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설하여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참여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추가] 전북개발공사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안 제9조제1항)
- 나. [변경] 사업내용 중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으로 변경(안 제20조제1항제7호)
- 다. [신설] 사업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사업’ 신설(안 제20조제1항제15호)
- 라. [신설]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0조제1항제16호)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박재완 의원 외 12인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나. [신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다. [신설]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 세입항목 및 세출항목 규정(안 제3조제2항,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최영규·최영일·이해숙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특수교육발전계획과 특수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평생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라.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시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이해숙·정호영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현재(2017. 4. 1) 6,056명으로 전년대비 496명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안 제9조)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해숙·양용모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학기관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학기관 보조금 지급,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나.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운영, 재산관리,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기준 마련·시행과 행정 지도 실시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중점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라. 학교 교직원·학교운영위원 등으로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이해숙·장명식·송성환 최훈열·양용호·박재완·최영규 이성일 의원 외 6명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내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내 터널의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나. 안전점검 실시, 평가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10.18		이 송 기 관	도지사,교육청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출석일시 : 2017. 10. 26 및 10. 27(이틀간)
- 나. 출석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 다. 출석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건의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10.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19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시·군간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 주말·공휴일 운행 시행이 제각각 달라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개선이 시급함, 광역시·도가 ‘각 시·군의 일관성 있는 요금체계 및 운행시간의 통일성 확보, 주말·공휴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현재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시·군 사무로 대부분 장애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직영운영방식인 전주시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과 효과성,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른 시·군의 경우는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배차 미비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한계로 이용자들 불만이 증가하고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교통약자가 증가하는 추세¹⁾를 감안하면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콜택시, 화물차, 카셰어링 등에 활용되고 있는 자동배차 알고리즘을 적용한 직영체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모호하여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범위설정이 필요함.

1) 전주시의 경우 매월 이용신청자 수 40~50명씩 증가 추세임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부담 증가 및 대·폐차 도래에 따른 국비지원을 건의함.
- 광역특별교통수단서비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광역단위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개선책 마련을 건의함.

서남대 학교폐쇄 계고 철회 결의안

제 출 자	강용구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10.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19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난 수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대학 측과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8월 24일 서남대에 학교폐쇄 계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음
- 이후 추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질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과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함
-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남대와의 인수협상을 교육부가 무위로 돌리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남대 관계자로 하여금 인수협상 포기를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1991년 개교 이래 26년의 전통을 가진, 의과대학과 학군사관(ROTC)까지 보유한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4년제 종합대학인 서남대학교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면 학생 2,300여명과 교직원 400여명은 모교와 일터를 잃고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됨
- 폐교될 경우 지리산권 의료복지와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길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낙후된 전북지역은 더욱 피폐해질 것임은 뻔하기에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결의함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7. 10.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19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GM 공장이 있는 많은 지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GM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주총특별결의안에 대한 ‘비토권’과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효력이 오늘 10월 만료되면서, 글로벌GM이 한국GM과 관련한 중요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는 점과
- 글로벌GM이 호주와 러시아, 인도에서 진행한 구조조정의 행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특히 9월 1일 취임한 신임사장은 GM인도 공장의 매각 및 내수를 포기하고 수출용으로 전환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 이런 상황에 글로벌GM이 한국 철수 혹은 공장폐쇄를 감행하더라도 정부의 개입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GM 17%를 가진 산업은행의 대주주로서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 또한, 군산GM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산업연관성이 제일 큰 기업이다. 이러한 자동차 공장의 어려움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며, 타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발전과 상호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각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관내 기업

자동차를 애용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호소한다.

- 또한 내고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생산품을 등록세 및 취득세 등 감면조치를 하여 기업이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국제자본의 경영전략에 일국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GM의 경영상황과 판단이 그대로 한국경제의 검은 그림자가 되도록 방지할 수는 없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전라북도의회는 거듭 촉구한다.

안정적인 방사능 방재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최훈열·정호윤·이성일 김영배·송성환·이호근·최명철 외 찬성의원 6인		제 출 일 자	2017. 10.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1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19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 발전량 키로와트시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의안번호 12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 출 자	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17. 10. 2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도지사,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대상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
- 대상기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 감사기간 : 2017. 11. 9 ~ 11. 21(13일간)
- 감사장소 : 전라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 감 사 반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학교폭력 대응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교육위원장		제 출 일 자	2017. 10. 2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난 8월 27일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아오던 전주 모 중학교 학생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학생의 사망은 부모에게는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것이며, 그 어떤 형태의 위로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를 비통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 전라북도의회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고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아왔고, 상담과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학교당국과 어른들의 관심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건 이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은 교육자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회는 학생자살 사건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총력 대응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결의한다.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조병서 의원 외 19인		제 출 일 자	2017. 10. 2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지표에서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개선으로는 전북지역 쌀 생산량에 비례하는 물량 배정은 수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농림부가 관련 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만큼 쌀 관련 정부 정책은 농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처럼 민감한 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하게 수년째 반복되는 것은 전북도민의 정부 농정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라북도의회는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 현실화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제 출 일 자	2017.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2013년 도입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에 따른 부채비율 230%이내 유지는 지방자치 취지에 반하는 중앙관리식 규제이며,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을 매우 낮게 평가한 처사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방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 현재 안행부가 시행하는 방식의 부채비율 규제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즉, 사회적 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부채비율의 증가를 단순히 지역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 짓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지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각 지역 공기업의 자산 규모와 지역별 공공복리에 대한 주민 수요 다양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일률적인 230% 부채비율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통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공익적 관점으로 변화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현철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7. 10. 2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0. 30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0. 31		이 송 기 관	청와대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국립’으로 지원을 명시한 사업으로서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함
- 하지만, 국립화에 반대 입장인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으로 산림청이 요구한 61억 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또다시 사업자체가 표류하며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음
- 과거 정부의 비정상적 행위를 문재인정부가 그대로 답습한다면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권의 가치와 신뢰는 퇴색되고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기에 당초 계획대로 국립화 사업 추진을 촉구함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7. 10. 18 ~ 2017. 10. 30)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통	도시 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 회	9	5	1						1	1				1
2017년 누 계	17	2	3			2		1	4	3	1		1	

○ 제출자별

(2017. 10. 18 ~ 2017. 10. 30)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8	8	7			1	
2017년 누 계	26	18	15	2	1		

2. 처리현황

(2017. 10. 18 ~ 2017. 10. 30)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8	8	8				
2017년 누 계	18	18	17			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10. 30)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82	82	81	1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8	8	8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9	19	19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1	11	11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8	28	27	1		
	교 육 위 원 회	8	8	8			
	기 타	8	8	8			
금회	소 계	8	8	8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5	5	5			
	환 경 복 지 위 원 회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1	1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1	1	1			
	교 육 위 원 회	1	1	1			
	기 타						
누계	소 계	90	90	89	1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3	13	13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9	19	19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2	12	12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9	29	28	1		
	교 육 위 원 회	9	9	9			
	기 타	8	8	8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10. 18 ~ 2017. 10. 30)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45	45		100	
	누 계		379	379		100	
도	금 회		39	39		100	
	누 계		408	408		100	
교육청	금 회		6	6		100	
	누 계		56	56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10. 18 ~ 2017. 10. 30)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산 업 경 제	문 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101	0	25	20	11	14	31	0
	누 계		332	0	82	55	67	46	78	4
도	금 회		39	0	13	7	11	8	13	0
	누 계		335	0	93	61	78	52	49	4
교육청	금 회		27	0	0	0	0	0	6	0
	누 계		42	0	2	2	0	2	36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횡수별)

(2014. 7. 1 ~ 2017. 10. 30)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2295	2295		
전라북도	1757	1757		
교 육 청	538	538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횡수별)

(2014. 7. 1 ~ 2017. 10.30)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998	439	329	246	273	602	94	15
전라북도	1521	402	308	233	251	276	44	7
교 육 청	477	37	21	13	22	326	50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10. 30)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7322	1772	842	984	1082	1749	546	347
전라북도	6072	1678	793	941	1004	1122	286	248
교 육 청	1250	94	49	43	78	627	260	99